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(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)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. 8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장



1. 공 고 명: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2. 8. 2. ~ 2022. 8. 15.
3. 근거법규: 민방위기본법 제23조,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
4. 게시장소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, 홈페이지
5. 의견제출기간: 2022. 8. 2. ~ 2022. 8. 11.
5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연번	성명	주소	위반사항	예정된 처분	비고
1	이*형	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, 10*동 *01호	2021년 민방위교육 불참	과태료 10만원 부과	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% 감경
2	최*빈	서울 중구 청구로3길 2*~6	"	"	"
3	고*영	서울 중구 다산로14길 *1	"	"	"
4	박*명	서울 중구 청구로3길 2*~2	"	"	"
5	임*현	서울 중구 청구로1길 *2, 30*호	"	"	"

### 7. 공시송달 내용

가.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부과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8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역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위 공시송달(공고)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,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8. 문의사항: 서울 중구 청구동 동정부2팀(☎02-3396-6806, FAX 02-3396-8971)